

2018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1차 모집공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2018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1. 사업개요

-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 또는 70%)를 지원

2. 신청자격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 지원제외 사유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8년 예산 : 106.5억원*, 약 1,000개 업체 지원
- * '18년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예산 35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3월중 별도 모집공고 예정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 비용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 * 직전년도 매출액 규모 구분에 따른 차등(30억원 초과: 50%, 30억원 이하: 70%) 지원
- 지원조건
 - 【붙임1】 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324개 인증) 획득비용 일부 지원
 - 기업당 최대 100,000천원까지 지원
 -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금액 : 천원)

인증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지원비율		인증분야별 개별한도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최대 4건	100,000	70%	50%	붙임2 참조
(*) 지원 항목 : 인증별 정부출연금 한도액 합산액은 기업당 지원한도 초과불가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등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CoC인증 (부분)완료보고 시 DoC인증에 해당하거나, 고부가가치인증이 3천만원 미만 소요 시는 【붙임 2】 인증분야별 정부출연금 인정/한도기준에 준하여 지급
- * CoC(공인적합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 인증: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 * DoC(자기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인증 :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이 같음되는 경우(인증 규정상 제3자(인증기관)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
- * 고부가가치 인증 : 인증획득비용 중 컨설팅비를 제외한 시험·인증·심사 등의 비용이 3천만원이상 소요되는 인증

- 사업 차수별 공고일 기준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한 기업은 지원 불가함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매출규모 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

4. 신청·접수

- 신청시기

- 일반공모 : 연중 3회(신청·접수는 마감당일 18시 까지)

구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공고일	2월 중	6.01	9.03
신청·접수	3.02~3.30	6.01~6.29	9.03~9.29
평가	4.01~4.30	7.01~7.31	10.01~10.31
선정·협약	5.01~5.20	8.01~8.20	11.01~11.20

*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일정변경 및 조기 마감(예산 소진시) 될 수 있음

- 연계지원 : '18년 9월말까지 (수시)

* 신청트랙 : 지방청 자율, 타사업연계, 온라인수출 활성화, 첫걸음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지원신청서 접수

※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해외인증신청] → [일반공모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등록

* 연계지원 대상기업은 [연계지원] 메뉴 중 해당 신청트랙에 신청

-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구비서류(【붙임 3】 참조)와 함께 본사가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5. 선정평가 및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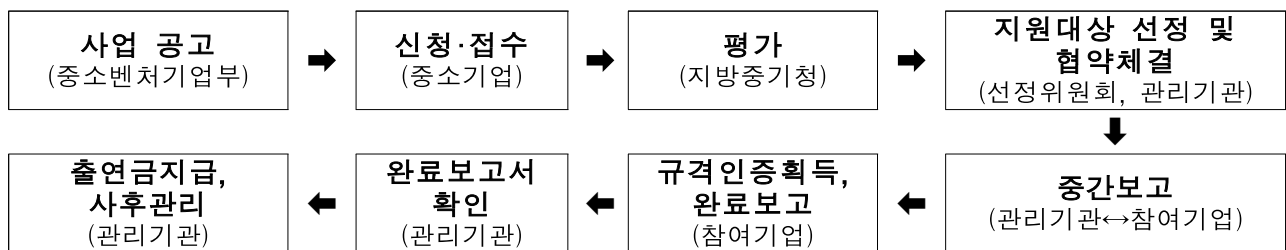
□ 평가

- (일반공모) : 지방청에서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 관계전문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직원, 수출지원센터 소속 파견 직원, 해외규격인증 전문가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가점부여 (10점)
 - 지방소재(서울, 경기, 인천 제외)기업 (3점)
 -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업체 (최대3점)
 - * KTR, KTL 및 지방중기청 시행교육(2017, 2018년 교육실적)
 - 기타 혁신형기업(Inno-Biz, 벤처, 그린비즈 등)
- 플러스 가점부여 (최대 6점)
 - GMD참여/매칭기업 (2점)
 -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2점)
 - 일자리 안정자금 참여기업 (2점)
- (연계지원) : 신청기업의 경우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 실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자율선정) 관할지역 내 수출실적 또는 수출가능성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각 지방청 별도의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타사업 연계지원) 최근 3개년('16~'18년) 해외마케팅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성과 창출 기업을 발굴하여 각 기관별 별도 기준에 따라 평가
 - (첫걸음지원/온라인활성화)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및 인증적정성 검토

□ 선정

- (일반공모) 민·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중복신청, 지원비용·규격인증의 적정성,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 등 지원대상 및 내용을 최종적으로 선정
- (연계지원)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지원대상 여부 및 인증적정성을 검토하여 가용예산의 40%내에서 우선 선정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자율선정) 수출실적, 신규인증, 수출예정기업 등을 평가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선정
 - (타사업 연계지원) 수출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한 기업 중 관리기관의 장의 대상규격검토 결과, 인증적합성이 확인된 기업을 수출유관기관의 장이 선정
 - (첫걸음 지원기업/온라인활성화 기업) 선정위원회는 첫걸음 지원 대상 기업 및 온라인활성화 참여기업은 별도의 평가 없이 우선 선정

□ 추진절차



6. 기타 유의사항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 대해 사전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
- 동 사업은 기업이 소요한 비용을 인증획득 완료 후 예산한도 내에서 일부 (50% 또는 70%)만 성공조건부 사후지급하는 사업임
 -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일부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의 허위 제안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부 또는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 유효기간이 도래한('18~'19년 인증만료) 해외규격인증 갱신 1회에 한하여 신규 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지원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동 사업 관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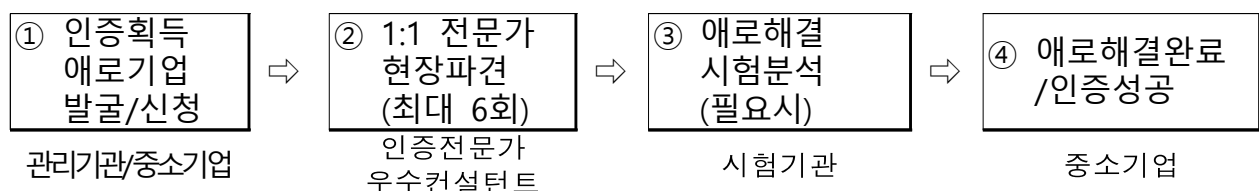
□ 해외인증기술교육사업

- 해외규격인증에 대한 중소기업 교육 실시(가점 1~3점 부여)
 -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위한 요구사항에 및 절차에 관한 기초/심화과정 교육
 - CE, CFDA 등 수요가 많고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인증 관련 기술 요건 위주로 과정 편성
- 인증교육 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교육신청]

□ 인증동반자 지원

- 제품 개발은 완료되었으나,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에 부합하지 않아 인증획득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컨설턴트 또는 인증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여 인증획득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 (지원비율 및 한도) 최근 3년간('15~'18년) 동 사업 신청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 현장패견 기술지원(최대 6회), 디버깅 시험비용 70% 지원 (DoC 250만원, CoC 500만원 까지)
- (신청방법)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 →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인증동반자 지원신청]

< 인증동반자제도 추진체계 >



8. 문의 및 확인

담당기관		전화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2~8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청>

지방청명	전화번호	FAX	주 소
서울지방청	02)2110-6336	02)2110-0663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105호
부산청	051)601-5161	051)341-0364	(48060) 부산 해운대구 APEC로 55 벅스코 제2전시 장 3층 371호
울산청	052)210-0062	052)283-0354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 (울산경제진흥 원내 1층)
대구·경북청	053)659-2244	053)626-8771	(42724) 대구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
광주·전남청	062)360-9193	062)366-9671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청	031)201-6946	031)201-6949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북부수출지 원센터	031)820-9033	031)820-9039	(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 센터 2층 206호
인천지방청	032)450-1133	032)818-8364	(21632)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청	042)865-6150	042)865-6159	(34111)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청	033)260-1673	033)260-1679	(24427)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청	043)230-5372	043)235-2494	(2811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 로 48
전북지방청	063)210-6482	063)210-6489	(5496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청	055)268-2542	055)262-5012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 번길 50
제주수출지원 센터	064)753-8757	064)753-8759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특 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붙임 1】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규격인증 현황(324개)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미국 (65)	3-A (미국낙농 및 식품가공기기인증)	AAR (미국철도협회)	ABS (미국선급협회)
	ACMIAP (미국창작재료협회)	AGA (미국가스협회)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AISC (미국강구조물협회)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ANSI (미국규격협회)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API (미국석유학회)	ASME (미국기계학회)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BPI (미국생분해성제품인증)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TI (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
	DOT (미국운수성)	Energy Star (미국에너지스타)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ETL (Electrical Testing Laboratories)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FDA-GRAS (미국식품안전물질등록)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Green Seal (친환경인증)	Green guard (친환경인증시스템)
	GSA (미국연방조달청)	HIRF (High Intensity Radiated Fields)	IACP (국제경찰청장협회)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MIL-STD-810G (미국육군장비규격)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NFRC (창호단열규정)	NGV2 (고압연료탱크규격)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NOP (유기제품인증)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NR (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NRTL (미국국가인정시험소)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PTCRB (북미휴대폰인증)	SCS (미국 과학적 환경인증시스템)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UL ECV (환경성주장검증)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USDA (미국농무성환경인증)	Water Sense (미국환경보호국인증)	WH-ETL (Warnock Hersey Mark)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WQA (미국수질협회)	
유럽 (28)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BPR (유럽살생물제 관리법)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CCNR (라인강항해중앙위원회인증)	CE (유럽공동체마크)	COSMOS (유럽유기농및천연화장품인증)
	CPNP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Eco-Labeling (EU 환경마크)	ECO-PASSPORT
	EFSA (유럽식품안전청)	e-Mark (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EN ISO 20471 (반사색안전조끼인증)
	ENEC (European Norms Electrical Certification)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FIBC (산업용포장재의정전분류)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내섬유재료규제)
	MPA (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Novel Food (신규식품과신규식품첨가제에대한인증)	Oeko-tex (유럽섬유환경인증)
	REACH (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gulation EC No1223/2009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RoHS (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네덜란드(2)	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Kiwa Water Mark (네덜란드위생안전인증)	
덴마크(1)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독일 (13)	AD2000 (독일압력용기인증)	BDIH (독일유기농마크인증)	DIN (독일규격협회)
	DVGW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	GL (독일선급협회)	GS (독일품질안전)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LFGB (독일식품용품법)	LGA (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LTF (독일감항성시험)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VdS (독일보험협회인증)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영국 (8)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BBA (영국건자재인증)
	BSI (영국표준협회)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I-LIDS (영국경찰비디오분석인증)
	LR (영국선급협회)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이탈리아 (2)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프랑스 (6)	BV (프랑스선급협회)	CSTB (프랑스건축자재인증)	DGCCRF (프랑스의소비자보호및불공정 경쟁감시국인증)
	ECOCERT (프랑스생산공장인증)	GTT (프랑스GTT선급)	NF (프랑스표준규격)
벨기에 (2)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Vincotte (벨기에환경인증)	
스페인 (1)	AENOR (스페인규격협회)		
핀란드 (1)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스웨덴 (2)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SP (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노르웨이 (4)	DNV (노르웨이선급협회)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NIPH (노르웨이음용수관련인증)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일본 (25)	BAA (일본자전거승인)	BOKEN (일본방적검사협회)	F☆☆☆☆ (일본친환경규격)
	F-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JAS (일본유기제품인증)
	JATE (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JETPVM (일본태양광인증)	JHOSPA (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JIS (일본표준규격)	JPAL (일본의료기기)	JWWA (일본상수도협회)
	MPHPT (일본우정통신성)	NK (일본선급협회)	PSC (Product Safety Consume-일본 소비생활용품제품안전인증)
	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JAPAN MIC (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일본 ECO 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일본건축자재평가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일본국토교통성인증	일본불연재료인증	일본위생허가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러시아 (9)	CU (러시아강제인증)	GOST (러시아표준규격)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RS (러시아선급협회)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소방안전증명서 (러시아)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품 질관리 및 위생안전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말레이시아 (2)	MDA (말레이시아의료기기등록)	SIRIM (말레이시아표준산업규격)	
멕시코 (3)	COFETEL (멕시코통신인증)	NOM (멕시코제품안전규격)	SSA (멕시코보건부-위생등록)
대만 (5)	ARTC (대만자동차및부품인증)	BSMI (대만표준검험국)	CNS (대만국가표준)
	CR (대만선급)	TFDA (대만의료기기)	
브라질(3)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ANVISA (브라질식품의약품인증)	INMETRO (브라질강제인증)
사우디 아라비아(1)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터키(1)	TSE (터키강제인증)		
싱가포르 (4)	BS476-22 (방화도어테스트)	HAS (싱가포르의료기기등록)	PSB (싱가포르생산성표준원)
	SINGAPORE GREEN LABEL		
아르헨티나 (2)	ANMAT (아르헨티나의료기기인증)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인도(11)	ARAI (인도자동차협회)	BIS (인도제품인증)	CDSCO (인도약품표준통제국)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DCG 인도식약청	IBR (인도보일러규정)
	IRS (인도선급인증)	RDSO (인도철도인증)	TRA (인도및티벳지역농자재인증)
	WPC (인도통신기기인증)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 Motor Vehicle Regulation Approval)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인도네시아 (3)	SNI (인도네시아국가규격)	BPOM (인도네시아식약청등록)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중국 (26)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CCC (중국강제인증)	CCS (중국선급인증)
	CFDA (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	CPA (중국계측기형식승인)	CQC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CSQL (중국안전품질승인)	HG/T2888-2010 (중국고무장갑시험검사)
	ICAMA (중국농업부등록)	LA mark	MOH (중국보건부인증)
	NAL (중국통신인증)	NEPSI (중국방폭관련인증)	NHFPC (신자원식품인증)
	NIM (중국계량과학원)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 증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	중국미생물수입등록
	중국위생허가		
카자흐스탄 (1)	GOST-K (카자흐스탄인증)		
캐나다(7)	CAN/CGSB155.20 (캐나다방염원단인증)	CRN (캐나다압력제품등록)	CSA (캐나다표준규격)
	CWB (캐나다용접협회)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IC (캐나다산업성)
	TC (캐나다위험물질운송인증)		
쿠웨이트 (1)	KUCAS (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		
페루 (1)	Registrosanitario (보건등록증)		
폴란드 (1)	B mark		
에티오피아 (1)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필리핀 (1)	ERC		
라오스 (1)	MPT (라오스우정통신부인증)		
베트남	CR Mark	베트남보건부의약품허가장품등록	베트남의료기기수입허가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3)	(베트남품질안전인증)		
호주 (11)	ACRS (호주신뢰성인증)	ADR (호주자동차안전및배기량규격)	AGA (가스안전인증-호주)
	AS (호주규격협회)	A-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C-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홍콩(1)	OFTA (홍콩이동통신인증)		
이라크(1)	COSQC (이라크표준)		
남아프리카 공화국(1)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이란(2)	MOH (이란보건부등록)	ISIRI (이란강제인증)	
나이지리아 (1)	SONCAP (나이지리아강제인증)		
아랍에미레 이트(1)	EQM (아랍에미레이트제품적합성마크)		
국제 (59)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AEM (장비제조및서비스에관한국제무 역협회인증)	ALE 1.0 (RFID제품인증)
	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BLUESIGN (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Bluetooth (블루투스제품인증)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 의인증)	BRCIOP (국제식품안전협회포장재승인 규격)
	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승인)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보안평가)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FSC (국제산림관리협회의회)
	FTC (화염시험인증)	G7Master (국제인쇄표준)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GOTS (국제유기농산물인증규격)	GRS (Global Recycled Standard)	HALAL(IFANCA)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HDMI (PC와디스플레이의인터페이스표준규격)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ISO 3834 (용접ISO인증)	ISO 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ISO 22899 (해양제트화재발생위험안전인증)
	ISO 7096 (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ITF Ball Approval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볼승인)	ITF Classified Court pace
	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NFPA1971 (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규격)	NON GMO
	OE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OK compost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PCI (신용카드 단말기보안국제규격)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QI (무선충전표준인증)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SINCERT (고압전기자제품및부품인증)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자외선차단검증인증)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WHO (세계보건기구)
	WPS (선급용접절차승인)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 * 위 지원대상이 아닌 규격인증은 “기타규격 인증지원”으로 신청가능하며,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미국국가인정시험소)
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 <http://www.osha.gov/dts/otpc/nrtl/>)에서 인정한 시험소로서 현재 18개 기관이 인증을 받음 (NRTL인정 18개기관: BACL, CSA, CSL, FM, IAPMO, ITSNA, MET, NNA, NSF, QAI, QPS, SGS, SWRI, TUV North, TUV PTL, TUV SUD, TUV PSG, UL)
- * RoHS : EU RoHS, 일본J-MOSS, 중국RoHS, ELV(폐자동차처리지침), WEEE(폐가전처리지침) 등 국제환경규제에 대비한 유해물질분석을 지원(단, 동일제품은 1회에 한하여 지원)

【붙임 2】

인증분야별 정부출연금 인정/한도 기준

(○ : 인정)

지원 규격명	제품분야	세분류	소요비용 인정여부			출연금한도액		분야 코드
			인증	시험	컨설팅 인정비용	30억 이하	30억 초과	
CE	시험성적서로 갈음하는 경우 (DOC)	전기안전, 전자파중 1개시험기준 (RoHS 이미 획득한 제품 경우)	○	○	400	2,100	1,500	DoC-CEEL1
		전기안전, 전자파 2개시험기준 (RoHS 이미 획득한 제품 경우)	○	○	400	3,900	2,800	DoC-CEEL2
		유무선통신 전기안전, 전자파 포함 (RoHS 이미 획득한 제품 경우)	○	○	2,200	8,200	5,900	DoC-CEEL3
		EC지침 기계류부속4, 5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	1,100	4,200	3,000	DoC-CEMD1
		CLASS I	○	○	400	4,900	3,500	DoC-CEME1
		기타제품류	○	○	600	4,100	2,900	DoC-CEETC
	인증서가 강제사항인 경우 (COC)	EC지침 기계류부속4, 5에 포함되는 경우	○	○	2,200	10,600	7,600	CoC-CEMD2
		CLASS II	○	○	4,400	21,000	15,000	CoC-CEME2
		CLASS III	○	○	4,400	21,000	15,000	CoC-CEME3
		ATEX	○	○	2,200	8,800	6,300	CoC-CEEX
		PED	○	○	1,100	5,500	3,900	CoC-CEPED
		기타제품류	○	○	2,800	4,800	3,400	CoC-CEETC
	ROHS	RoHS 시험을 신규로 진행하는 경우	-	○	-	1,900	1,300	R(추가코드)
	광생물학적 시험	-	-	○	-	1,900	1,300	B(추가코드)
FCC	인증서 미발급	-	-	○	400	2,000	1,400	DoC-FCC1
	인증서발급	-	○	○	2,200	5,600	4,000	CoC-FCC2
FDA	의료기기	Establishment Registration	○	-	400	3,000	2,200	DoC-FDA0
		510(k)급	○	○	4,400	10,700	7,700	CoC-FDA1
		PMA	○	○	4,400	21,000	15,000	CoC-FDA2
	화장품,식품, 화학제품 등	검사	-	○	400	1,600	1,100	DoC-FDA3

지원 규격명	제 품분야	세분류	소요비용 인정여부			출연금한도액		분야 코드
			인증	시험	컨설팅 인정비용	30억 이하	30억 초과	
REACH	전기전자	SVHC 및 후보물질 비사용 증명용 시험	-	○	400	1,900	1,300	DoC-RCH
	화학물질	본 등록	○	○	4,400	21,000	15,000	CoC-RCH
NRTL	부품 및 세트		○	○	400	7,300	5,200	CoC-NRTL1
	기타 (플라스틱 등 원재료)		○	○	400	7,000	5,000	CoC-NRTL2
선급분야	형식승인(Type Approval)		○	○	400	2,100	1,500	CoC-SHIP1
	검사(Inspection Certificate)		○	○	600	5,200	3,700	CoC-SHIP2
PSE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인증서 미발급)		○	○	600	3,500	2,500	DoC-PSE1
	특정 전기용품(인증서 발급)		○	○	600	5,700	4,100	CoC-PSE2
RoHS	RoHS 인증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함		○	○	400	1,900	1,300	DoC-RoHS
C-Tick	-		○	○	400	2,700	1,900	DoC-CTK
CPSIA	-		-	○	400	1,700	1,200	DoC-CPS
SEMI	-		-	○	2,200	11,100	7,900	DoC-SEM
기타분야	인증서 미발행		○	○	1,000	3,500	2,500	DoC-ETC
	인증서 발행		○	○	2,800	10,000	7,000	CoC-ETC
고부가가치인증			○	○	4,400	100,000		H(추가코드)

- * 인증별 한도금액 합산액은 기업당 한도금액(100,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고부가가치인증 : 시험+인증 비용이 30,000천원 이상 소요되는 제품의 경우, 한도금액은 100,000천원 적용 가능(단, 신청당시 사전 견적서 제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관리기관이 인정 한 경우에 한함)
- * CSA, TUV 인증 중 OSHA(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에서 지정한 적용범위와 해당규격으로 시험한 경우에는 NRTL로 지원
- * 추가코드는 인증획득 시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분야코드에 출연금한도액을 합산하여 지원하는 분야임
- * 컨설팅인정비용은 지원금액이 아닌 인정가능한 컨설팅비용 한도이며 50%~70%비율로 지원됨
- * 컨설팅비용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에 한하여 소요비용을 인정함
(http://www.exportcenter.go.kr/eservice_new/foreign_ktr/distuse/prdSrChList.jsp)

【붙임 3】

2018년 제1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기업 구비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신청기업 모두 제출

- 【별지 제1호】의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신청서 1부.
- 【별첨1-2】의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별첨1-3】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2017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확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 사업계획서
- 고부가가치인증 신청의 경우 :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 1부(신청시 전산업로드)*
- 인증갱신 신청의 경우 : '18~'19년 유효기간이 도래한 이전 인증서(신청시 전산업로드)*

□ 선택 제출서류 :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구분	평가항목	제출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수출 인증 가능성	사업계획서	신청제품 설명서, 해외시장조사 자료, 수출계약서(offer sheet, P/O(Purchase Order 등), 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및 견적서 등 * 인증 요청 대상 제품에 대해서만 작성
수출 잠재력	수출실적기업	◆ 수출실적 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17년도, 수출실적증명원 - (직접수출)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외국환은행장,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등 - (간접수출) 한국무역정보통신(www.ktnet.co.kr) 또는 은행별 수출실적증명원 * 단, 수출기업 육성 등 사업 취지 등을 감안하여, 간접수출실적은 수출실적증명원 금액을 기준으로 50%를 반영
	수출성장기업 (17년도수출액-16년도수출액)/16년도수출액*100	2017년도, 2016년도 수출실적증명원(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액비중('17년 기준) (수출액/매출액*100)	'17년 국세청 홈텍스 또는 회계사 인정 재무제표사본 및 '17년 수출실적증명원 * '17년 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수출 기반	시장개척단 파견기업	참여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1부 (확인서가 없는 참여기관은 별첨1-6 서식 활용)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수출인큐베이터 선정기업	제출 생략
	해외지사 보유기업	해당국가에서 발행하는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제품 해외홈쇼핑방송사업 참여기업	제출 생략
	수출준비 활동	외국어카타로그 및 국내외발행(외국어) 홍보지 사본1부
기술	KS, GMP, HACCP, ISO 등 품질시스템 인증보유기업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각 1부

품질성	NET, NEP 보유기업	제출 생략
	특허(전용실시권 포함)·실용신안 등록	특허(또는 전용실시권 계약서) · 실용신안등록증 1부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된 경우만 인정)
가점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	2018년도, 2017년도 교육 수료증 제출
	Inno-Biz 기업	제출 생략
	벤처기업	
	경영혁신형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포함)	
	창업초기기업	제출 생략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1부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또는 여성기업법 제2조1호에 의한 여성기업임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
	수출유망중소기업	제출 생략
	수출성공패키지 선정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플러스 가점	GMD사업 참여/매칭기업	제출 생략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스마트공장 구축기업협약서 제출
	일자리 안정기금 참여기업	일자리 안정기금 참여기업 확인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유선확인